

수질검사 및 성분검사의 검사기관·검사주기 및 검사항목(제12조제1항관련)

구 분	검 사 기 관	검 사 주 기	검 사 항 목
수질검사	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시·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행할 수 있으며,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)	연 1회 (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주기 전에 직권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)	인체에의 유해여부 (음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음용적합여부를 포함한다)
성분검사	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(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)	5년마다 1회. 다만, 유황성분(total S-2 성분 함량), 유리탄산(free CO ₂) 성분의 경우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(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주기 전에 직권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).	1. 주요성분 2. 온도 3. 이용에 따른 효과 4. 이용에 있어서의 주의사항